

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다음에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증 가 율 | 대부료 인상율 |
|-----------------|----------------------|
| 10% 이상~ 20% 미만 | 10%+(증가율-10%)×0.3 |
| 20% 이상~ 50% 미만 | 13%+(증가율-20%)×0.1 |
| 50% 이상~100% 미만 | 16%+(증가율-50%)×0.06 |
| 100% 이상~200% 미만 | 19%+(증가율-100%)×0.03 |
| 200% 이상~500% 미만 | 22%+(증가율-200%)×0.01 |
| 500% 이상~ | 25%+(증가율-500%)×0.005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 한다.

○財務局所管業務報告에대한質疑答辯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財務局所管 市政에 관한 質疑·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라며 質疑와 答辯은 財務局長께서 앉으신 대로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財務局 市政報告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資料를 토대로 해서 많은 研究와 檢討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深度있는 質疑를 해 주시고 財務局長께서는 答辯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충분히 理解와 納得이 될 수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質疑가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지난 번에 財務局長께서 市政報告를 소상히, 궁금한 점까지 다 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質疑할 것을 答辯까지 다 해 주셨어요」하는 委員 있음)

네, 答辯까지 다 해 주셨지요.

그러면 財務局所管 市政質疑는 지난 번 財務局所管 業務報告때 財務局長께서 소상히 報告와 더불어 答辯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質疑가 없습니다.

그러면 委員 여러분, 財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財務局 條例案과 그 다음에 市政質疑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時에 續開를 하도록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局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53分 會議中止)

(16時 07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業務報告에대한質疑答辯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農水産物都賣市場管